

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
				즉시	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(주민등록지 주소)		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	
최초 결정 내용	결정번호				
	결정내용				
	[] 전세사기피해자 [] 법 제2조제4호나목 [] 법 제2조제4호다목 전세사기피해주택 소재지(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동·층·호까지 명확히 기재)				
분할 납부 신청 내용	① 총 환수금액	② 일시납부 금액	③ 분할납부 신청금액	④ 분할납부 횟수	⑤ 월 납입일
	원	원	원	회	일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공공주택사업자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작성방법

가. ① 총 환수금액칸에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, ② 일시납부 금액칸에는 현재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,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칸에는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
• ① 총 환수금액 = ② 일시납부 금액 + ③ 분할납부 신청 금액

나. ④ 분할납부 횟수칸에는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분할 횟수를 적습니다.

• 총 환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: 20회 이내,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: 40회 이내, 2천만원 이상인 경우: 60회 이내

2. 유의사항: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